• 새로운 연수 • 튼튼한 연수 • 따뜻한 연수

Better life Yeonsu

연수구보

■구정방향■
"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"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(우)406-723 ☎ 749-7403 / FAX 749-7399

선람	기 관 의 장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부록 제828호 2014. 10. 13.(월)

【공 고】

○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-859호(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신청 재공고) ····· 1

【고 시】

○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4-80호(도로명 주소 고시) ····· 8
○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4-81호(도로명 주소 고시) ····· 9

회람							

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4-859호

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신청 재공고

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약정이 2014. 12.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『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2014년 10월 10일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1. 지정방법 : 공개경쟁방법
2. 금고의수 : 1개의 금고(단수금고)

※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

3. 신청자격 :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4. 약정기간 : 2015. 1. 1. ~ 2018. 12. 31.(4년)
5. 금고의 주요업무

○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
○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
○ 유가증권(수입증지 등)의 출납 및 보관
○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

6. 신청절차

○ 서류열람

- 기　　간 : 2014.10.15 (수) (※09:00~18:00 근무시간 중)
- 장　　소 : 연수구청 1층 세무과 (☎ 032-749-7532)
- 열람서류 : 2011~2013 세입세출결산서, 2014 세입세출예산서 등

○ 신청서 접수

- 기　　간 : 2014.10.20(월) (※ 09:00~18:00 근무시간 중)
- 장　　소 : 연수구청 1층 세무과
- 제출부수 : 제안서 12부 (원본1, 사본11)
- 접수방법 : 직접 방문접수
- 제출서류 : 금고지정 신청서, 법인 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,정관 (사본), 각서, 사용인감확인서 각 1부, 금고지정 제안서 및 각종 증빙서류

※ 신청서 및 제안서 서식은 홈페이지 첨부

7. 심의·평가방법

○ 「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(별표 1)과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(별표 2)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,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 심사평가

○ 구금고지정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를 근거로 종합적인 서류심사

○ 심사기준에 의거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고,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며, 금융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
○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면접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에서는 면접에 응하여야 함.
(※ 불응 시에는 평가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
8.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〔별표1〕,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[별표2]

9. 약정 및 손해배상

○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

○ 약정포기 또는 금고약정의 지연 등 새로이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발생시 해당 금융기관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, 향후 금고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○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

○ 금고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15. 1. 1일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, 2015. 1.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

10. 비용부담

○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

11. 기 타

○ 제안서는 『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신청안내』에 따라 작성

○ 제안서등 제출된 일체서류(내용)는 반환하지 않음

○ 제안서 접수마감 후, 금융기관의 추가서류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

[별표 1]

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항 목	세 부 항 목	배점	비고
계		100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	30	
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- 국외평가기관(6점) - 국내평가기관(4점)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(10점)을 평가	10	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 - BIS 자기자본비율 (안정성,7점)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안정성,7점)로 평가 - 자기자본이익율 (수익성,6점) - 고정이하여신비율 (건전성,7점) ※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(신협, 농수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융감독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※ 금융감독원,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	20	
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	17	
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.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	6 5 4 2	
3. 지역주민이용의 편의성		21	
	가.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	5 6 7 3	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	23	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※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6 7 7 3	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		9	
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. 구와 협력사업계획 ※ "지역사회에 대한 기여"는 '실적'으로만 평가, "구와 협력사업"은 '계획'으로만 평가	5 4	

※ "BIS자기자본비율"이 "총자본비율"로 명칭이 변경됨(금융감독원,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'13.11.22)

[별표 2]

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(제3조제2항 관련)

Ⅰ. 일반원칙

1.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·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.
2.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 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.
3. 모든 세부 항목별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만점을 1순위로 하여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.
   다만, 항목 2(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 및 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)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.

Ⅱ.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
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(30점)

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(10점)

○ 평가기준

- 공인된 국내·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·평가

○ 평가방법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,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신용조사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·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(20점)

○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·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,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·평가

○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

- BIS 자기자본비율(안전성, 7점)
- 자기자본이익률(수익성, 6점)
- 고정이하여신비율(건전성, 7점)

※ “BIS자기자본비율”이 “총자본비율”로 명칭이 변경됨
(금융감독원,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‘13.11.22)

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(17점)

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(6점)

○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(5점)

○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(4점)

○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라.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(2점)

○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3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(21점)

가.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(5점)

○ 지역주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나.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(6점)

○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다.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(7점)

○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,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 (전자납부 등) 증진 방안,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라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(3점)

○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4. 금고업무 관리능력(23점)

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(6점)

○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 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(7점)

○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(7점)

○ 금고관련 세입·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및 전산보안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라. OCR 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(3점)

○ OCR 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(9점)

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(5점)

○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,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·평가한 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

나. 구와의 협력사업계획(4점)

○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·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과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

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4-80호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. 10. 10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134-1외 1건

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주소 폐지사유
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15-6	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134-1	2014.10.10	건축물 멸실
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65-29, 288-11, 265-41, 265-64, 265-43, 265-37	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172	2014.10.10	건축물 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749-7594~5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4- 81호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. 10. 15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176 외1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65-29,265-37,265-41,265-64,288-11	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176	신축	2009-07-10	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의 아들인 비류가 남하하여 세운나라에서 유래
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15-6	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134-1	신축	2009-07-06	옛 백제사신이 중국과 통교하기 위해 출발하던 한나루를 전하기 위하여 제명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749-7594~7595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4. 10.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